

참고

「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명칭) ① 「협동조합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(이하 “협동조합등”이라 한다)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(이하 “사회적협동조합등”이라 한다)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	제2조(명칭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회적협동조합</u> -----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·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·이종협동조합연합회</u> (이하 “협동조합연합회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과</u>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	②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은</u> ----- -----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이</u> ----- -----.
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“출자금,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
1.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. 가. ~ 다. (생략) 라.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	1.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</u> ----- ----- -----
2.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시·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. 다만,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가. ~ 다. (생략) 라.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	2.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</u> ----- ----- -----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	④ ----- -----

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<u>협동조합연합회</u> 또는 <u>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</u> 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</u> ----- ----- -----.
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<u>협동조합연합회</u> 또는 <u>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</u> 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 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	⑤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<u>협동조합연합회</u> 또는 <u>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</u> 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 른 행정심판이나 「행정소송 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	⑦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) 법 제11조의2제2항 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.	제3조(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협동조합등 및 <u>사회적협동조 합등</u> 과 관련된 법·제도의 개	1. ----- <u>협동조합연합 회등</u> -----

선에 관한 사항	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협동조합등 및 <u>사회적협동조 합등</u> 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 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	3. ----- <u>협동조합연합 회등</u> -----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시·도 협동조합정책협의 회) ① (생 략)	제4조(시·도 협동조합정책협의 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·조정한다.	②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 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	3. ----- <u>법 제11조 제7항</u> -----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법 제 13조제3항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 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</u> ”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<u>사회적협동 조합등</u> 을 말한다.	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 -----“ <u>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등협동조 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</u> ”----- ----- <u>협동조합연 합회등</u> 을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제2장 협동조합등</u>	<u>제2장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</u>

<신 설>

<신 설>

2. 부채총액을 자기자본(납입출자금, 우선출자금, 적립금,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)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이하 일 것

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”이란 제1항제2호의 자기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
제8조의3(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)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, 좌수(座數), 발행가액,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조의4(우선출자의 청약)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

<신 설>

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이사장이 작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동조합의 명칭
2.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
3.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
4.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
5.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자본
6.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, 내용 및 좌수
7.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
8. 제8조의10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

제8조의5(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)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

	<u>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.</u>		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6(우선출자증권의 발행)</u> <u>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(이하 "증권"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없다.</u> <u>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	<u><신 설></u>	<u>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<u>제8조의9(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)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</u> <u>1.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</u> <u>2. 증권의 수와 번호</u> <u>3. 증권의 취득 연월일</u>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7(증권의 형식)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.</u>	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10(우선출자의 매입소각) 협동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8(증권의 기재사항)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u> <u>1. 협동조합의 명칭</u> <u>2. 우선출자의 액면금액</u> <u>3. 우선출자의 내용</u> <u>4. 증권번호</u> <u>5. 발행 연월일</u> <u>6. 우선출자 좌수</u> <u>7. 우선출자자의 성명(법인인</u>	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11(우선출자자의 책임)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(引受價額)을 한도로 한다.</u>
		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12(우선출자의 양도)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</u> <u>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.</u> <u>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⑤ 증권을 질권(質權)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제8조의13(우선출자자 총회) ① 협동조합은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8조의14(통지와 최고) 우선출자

제10조(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) (생략)

제11조(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)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. (생략)
2.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·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12조(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

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.

제10조(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)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) -----제81조제1항(법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등-----

제12조(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5개월-----

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협동조합의 흡수합병)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

-----.

제13조(협동조합의 흡수합병) ① 법 제56조제7항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56조제7항-----

-----.

<삭 제>

④ -----

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) ① 법 제80조의2(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 경우 “협동조합연합회”는 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”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

-----.

제16조(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) ① 법 제80조의2(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

-----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” 또는 “이종협동조합연합회”----)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<삭 제>

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30조(조직변경의 인가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

범 제1

01조 제8항

제30조(조직변경의 인가) ① (현
행과 같음)

<삭 제>

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.

1.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
2.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
3.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
제31조(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
인가 취소의 공고) (생 략)

③

법 제1

05조의2제9항

<삭 제>

제31조(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)

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6.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. 법 제86조제3항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. 법 제101조제2항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법 제85조제1항·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----- ----- 7. -----(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-----)-----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----- 8. -----(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에 따라-----)-----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-----	9. (생략) 10. 법 제102조제2항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. 법 제103조제5항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. (생략) 13. 법 제111조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. 법 제112조제1항(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	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(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에 따라-----)-----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--- 11. -----(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에 따라-----)-----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----- 12. (현행과 같음) 13. -----(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-----)-----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----- 14. 법 제112조제1항----- ----- -----및 제11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-----
--	--	--	---

② (생 략)

별표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 조 문	과태료 금액	
		1차 위 반	2차 위 반 이 상
가. 협동조합등 또는 <u>사회적협동조합등</u> 이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 제1호	100	200
나. (생 략)			
다.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<u>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</u> 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	법 제119조	100	200

② (현행과 같음)

위반행위	근거 법 조 문	과태료 금액	
		1차 위 반	2차 위 반 이 상
가.----- 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</u> 이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 - - - - - - -	- - - - - - - -	- - - - - - - -
나. (현행과 같음)			
다. <u>협동조합연합회등</u> 이----- ----- -----	- - - -	- - - -	- - - -

른 명칭의 사용
금지 또는 수정
명령을 따르지
않은 경우

라.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 제2항(법 제76조 · 제91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

<신 설>

제1항 제3호				----- ----- ----- -----	- - - -		
법 제119조 제2항 제1호	100	200		라.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등</u> 이----- -- --(법 제76조 · 제91조 · 제115조 제1항 및 제115조의5 제1항 · 제2항에 ----- ----- ----- -----	- - - - - - -	-	-
				마. 협동조합등 및 <u>협동조합연합회등</u> 이 법 제22조의2 제2항 · 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	100	200

경우				-				
타. 협동조합등 및 <u>사회적협동조합</u> <u>등의</u> 임직원 또 는 청산인이 감 독기관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 11 9 조 제 3 항 제 5 호	50	100	파. ----- <u>협동조합연합회</u> <u>등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	-	-	-